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94
----------	-------

발의연월일 : 2023. 12. 12.

발 의 자 : 박대출 · 한무경 · 이명수
정우택 · 유상범 · 지성호
류성걸 · 金炳旭 · 최연숙
김예지 · 이 용 · 김태호
김영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론조사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등록제한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그 외 다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2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정당 및 방송사업자 등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공표 또는 보도 여부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신고의 예외 대상인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이 부실하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제8조의9제5항 및 제108조제3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제1항 중 “여론조사”를 “여론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에”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이내, 제3호에”로, “1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8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1항 및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여론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8조의9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행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u>여론조사</u> 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 ----- ----- <u>여론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
② ~ ⑭ (생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u>제3호</u> 에 해당하여 등	⑤ ----- ----- ----- ----- ----- ----- ----- <u>제1</u>

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
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 3. (생략)

⑥ (생략)

<신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
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
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
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이내, 제3호에-----

-----4년-----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
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
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 ⑭ (생 략)	④ ~ ⑭ (현행과 같음)
-------------	----------------